소상공인 보호 및 지원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 (윤영석의원 대표발의)

의 안 번 호 8463 발의연월일: 2021. 3. 2.

발 의 자 : 윤영석 · 강기윤 · 권성동

박대수・박성중・서병수

이채익 • 임이자 • 최형두

홍준표 의원(10인)

제안이유 및 주요내용

코로나19 팬데믹이 1년 넘게 진행되면서 국민들의 삶은 큰 아픔을 겪고 있고, 감염병 확산을 막기 위한 정부의 계속된 영업금지 및 제한 조치를 묵묵히 따랐던 소상공인과 자영업자의 경제적 피해는 날로 커 지고 있음.

특히 영세한 자영업자 및 소상공인의 경우 제한적인 사업장 운영으로 전기요금 및 도시가스요금과 같은 기초 공공요금 납부도 버거워하는 상황임.

그러나 정부의 지원은 피해에 한참 못미치는 100만원~300만원의 긴급재난지원금과 함께 한시적인 전기·가스요금의 3개월간 납부유예 나 분할납부 등에 그치고 있어 실질적인 도움이 되지 못하고 있음.

이에 재난에 따른 방역당국의 행정조치로 피해를 입은 소상공인에 게는 제도적으로 전기요금 및 도시가스요금을 감면할 수 있도록 함으

로써 조금이나마 피해 소상공인의 경제난을 완화하려는 것임(안 제12조의4 신설).

법률 제 호

소상공인 보호 및 지원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

소상공인 보호 및 지원에 관한 법률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. 제12조의4를 다음과 같이 신설한다.

제12조의4(재난에 따른 공공요금 감면) ① 「전기사업법」에 따른 전기판매사업자 및 「도시가스사업법」에 따른 도시가스사업자는 「재난 및 안전관리 기본법」 제3조제1호에 따른 재난으로 인하여 방역당국으로부터 「감염병의 예방 및 관리에 관한 법률」 제49조 제1항제2호에 따른 집합금지 또는 집합제한 조치를 받아 영업에 심대한 피해를 입은 소상공인의 전기요금 및 도시가스요금을 20% 범위에서 6개월간 감면할 수 있다.

- ② 정부 및 지방자치단체는 제1항에 따라 전기요금 및 도시가스요 금을 감면하는 사업자에 대하여 예산의 범위에서 재정적 지원을 하여야 한다.
- ③ 제1항에 따른 감면대상 소상공인의 기준, 감면 비율은 업종, 사업장 규모 및 종사자 수 등을 고려하여 대통령령으로 정한다.

부 칙

제1조(시행일) 이 법은 공포 후 3개월이 경과한 날부터 시행한다.

제2조(공공요금 감면에 관한 적용례) 제12조의4의 개정규정은 이 법시행 당시 「재난 및 안전관리 기본법」 제3조제1호에 따른 재난으로 인하여 방역당국으로부터 「감염병의 예방 및 관리에 관한 법률」 제49조제1항제2호에 따른 집합금지 또는 집합제한 조치를 받은 소상공인에게도 적용한다.

신·구조문대비표

현 행	개 정 안
<신 설>	제12조의4(재난에 따른 공공요금
	<u>감면) ① 「전기사업법」에 따</u>
	른 전기판매사업자 및 「도시
	<u>가스사업법」에 따른 도시가스</u>
	사업자는 「재난 및 안전관리
	기본법」 제3조제1호에 따른
	재난으로 인하여 방역당국으로
	부터 「감염병의 예방 및 관리
	에 관한 법률」 제49조제1항제
	2호에 따른 집합금지 또는 집
	합제한 조치를 받아 영업에 심
	대한 피해를 입은 소상공인의
	전기요금 및 도시가스요금을 2
	0% 범위에서 6개월간 감면할
	<u>수 있다.</u>
	② 정부 및 지방자치단체는 제
	1항에 따라 전기요금 및 도시
	가스요금을 감면하는 사업자에
	대하여 예산의 범위에서 재정
	적 지원을 하여야 한다.
	③ 제1항에 따른 감면대상 소
	<u> 상공인의 기준, 감면 비율은 업</u>
	종, 사업장 규모 및 종사자 수

<u>등을 고려하여 대통령령으로</u> <u>정한다.</u>